

| 이슈페이퍼 2020-10 |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이윤진

1. 탈북민 입국 동향과 지원제도
2. 현 정부 탈북민 지원정책과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대책
3.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
4.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참고문헌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 요약 ◆◆

-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탈북민, 탈북가정에 대한 관심을 소환하는 계기가 됨. 이 사건 이후, 정부는 탈북민 생활안전 종합 대책 발표,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됨.
-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육아부담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의 근로능력 부족,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구소득원을 사회보장급여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지만, 법적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 탈북 모자 사망 사건도 이러한 사례임.
-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취업 장려 위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와 건강상(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등 복합적임)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한부모 여성에게는 작동하기 어려움. 한편, 탈북 빈곤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급액에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높은 교육열을 보임.
- 탈북 가정 중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탈북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생산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의 한계가 있음.
- 이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으로 1) 탈북 한부모 실태조사 명문화 2)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편입 3)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포함 검토 4) 기관교육·보육비용 지원정책: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5)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등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지원방안(이윤진·김화순·김민주, 2020)」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1

탈북민 입국 동향과 지원제도

가. 입국동향

- 2020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수는 약 3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이중 여성이 72.1%로 다수를 차지함. 탈북민 유입 인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1,000명대로 급락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강화됨.
- ◆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함을 시사함.

나.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되어 옴. 현재 정착금 지원, 임대주택 제공 등의 기본 틀은 2004년도에 마련되었으며 취업과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옴.
- ◆ 동법에 의하면 탈북민에 대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함(제4조). 이에 따라 한국사회로의 “이주”라는 공통점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집단과는 차별화된 탈북민 정착지원을 추진함.

다. 정착지원 정책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정착지원정책의 전달체계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정부-지자체-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통일부, 2019: 14).

2 현 정부 탈북민 지원정책과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대책

가.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¹⁾

- 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기본방향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임.
-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정책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탈북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지방-민간의 유기적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임.
- ◆ 본 기본계획에서 탈북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를 추리면 <표 1>와 같음.

<표 1>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탈북 여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1-1-4.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희망 탈북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강화	6-1-3.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한부모가정 등의 우선 지원 가능	여가부
	6-1-4.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위로방문, 긴급생계지원, 무연고 탈북민 장제·납골 안치, 사망위로금 등 지원	통일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pp.19, 29, 35, 37.

나.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정부는 23개의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총 6개의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발표함.

1) 「북한이탈주민법」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함.

- ◆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탈북민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탈북민의 기초생활 보장 특례 범위 확대,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대상 고위험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추적·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가구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함.

다. 감사원 감사 실시

- 감사원은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개(1개 주의, 6개 통보 조치)의 지적사항을 발견함.
- 통보 조치 중의 하나가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음.
 -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중 임신, 출산을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 매칭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발견, 구제방안 마련을 통일부에 통보함.

3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

가. 탈북 여성 취업 실태

-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별 차이 없으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엇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23.8%로 일반국민 3.4%에 비해 8배 가량 높음. 월평균 임금도 일반국민보다 약 66만원이 낮음.
- 고용률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남성은 70.6%, 여성은 56.6%로 여성이 낮음.
 - ◆ 거주기간별 남녀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3년 미만 43.6%→3~5년 미만 51.8%→10년 이상 57.0%), 남성은 3~5년 집단이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76.6%), 거주기간 10년 이상 된 집단이 정착초기(3년 미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3년 미만 69.6%→10년 이상 67.5%).

-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성별로 비교하면, 상용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적지만 임시직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많음(남 8.6%<여 15.2%).
- 요약하면, 안정된 지위인 상용직의 경우 3~5년 거주집단에서 가장 높고 거주기간 10년 이상 집단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남. 성별 고용상의 지위는 상용직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나, 임시직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음.

나. 탈북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 탈북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43.8%로 가장 많았고, 편견과 차별(12.6%), 근로여건(9.6%) 순이었음. 거주기간별 차이는 거의 없음.

〈표 2〉 탈북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단위: %

구분	육아 부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채용, 임금 등)	가족 돌봄 (육아 제외)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 정보 부족	여성의 직업 의식 부족	가사 부담	모름 기타	계	
전체	43.8	12.6	9.6	7.6	5.7	4.1	3.7	3.7	9.3	100.0	
남한 거주 기간별	3년 미만	42.9	11.6	6.0	11.3	6.7	5.4	3.0	2.6	10.6	100.0
	3~5년 미만	38.5	14.7	10.8	8.3	7.3	3.9	3.3	3.6	9.6	100.0
	5~10년 미만	45.5	13.1	9.1	6.7	5.7	3.7	3.8	3.6	8.9	100.0
	10년 이상	43.2	11.9	11.4	7.3	4.9	4.0	4.0	4.1	9.2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p.124-125.

- 본 연구²⁾에서는 육아부담과 함께, 건강상 어려움이 취업을 못하는 주요 이유로 나타남(표 3 참조). 법적 보호기간인 5년 경과인 사례가 더 많았음(총 6사례 중 4사례).

취업할 계획은 있으나, 제가 자격증도 없고 남들처럼 컴퓨터자격증도 없고 취업하려면 그런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수술해서 걷긴 걸어도 너무 오래 4, 5시간 서있으면 다리가 통통 부어요...식당 같은 곳에 취업은 하고 싶으나 애가 어리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사례 1).

저도 취업을 하고 싶는데 몸이 안되고, 한글도 모르고.....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수면제를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작년에 다리 수술을 했어요. 왼쪽 다리 무릎이 십자인대가 파열돼 한국 와서 수술을 해서 못을 박았는데 학원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연골이 빠져서 다시 수술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까지 땡겨요.....솔직히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꿈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수십 번 해요(사례 4).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어요. 거기는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다행히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좀 외롭다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서럽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실제 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사례 5).

-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못함으로써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함.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수급을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이었음.

- ◆ 수급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월 100만원 초반 내외임. 여기에 아동수당,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지급), 한부모지원금(초등학생 이상 자녀인 경우)을 추가로 받음.
- ◆ 남한 입국 후, 법적보호기간 5년이 훨씬 경과한 사례 1, 4, 5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보호기간 5년이 지나도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탈북 한부모 가정이 많음을 시사함.

2) 본 연구의 면담참여자(총 6사례)는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 또는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현재 배우자(동거남)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를 고려하여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조사에 참여함.

〈표 3〉 심층면담조사 대상자(탈북 여성) 특성

사례 번호	출생지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자녀수	북한 학력	북한 직업	남한직업		취업 중단 이유	수급 여부	기타 지원금 여부
								과거	현재			
1	양강도	35	2007	2014	2명 (3, 5세)	고졸	무직	한약 보조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아동수당
2	함경북도	40	2016	2016	1명 (20개월)	고졸	장마당	무직	무직	육아	수급	양육수당 아동수당
3	함경북도	45	1997	2003	2명 (8, 10세)	고졸	군인	식당 및 청소 아르바이트		육아	비수급	한부모 지원금 (아동 양육비)
4	함경북도	38	2003	2012	2명 (5, 7세)	소학교 중퇴	농사	무직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아동수당
5	함경북도	38	2013	2013	2명 (15개월, 18세)	중졸	농사	피부 관리사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양육수당 아동수당
6	함경남도	41	2008	2016	1명 (11세)	고졸	간호 조무사	공장 직원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비수급 (수급 신청중)	한부모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주: 자녀수는 현재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를 나타냄.

- 현재 동거하는 자녀들은 모두 남한 출생임. 생부는 사망 또는 별거 등으로 부재임. 배우자가 양육비는 지원하는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자녀양육의 책임은 오로지 탈북 여성이 지고 있음.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 수유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양육의 필수물품인 분유와 기저귀 구입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음.

아이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제가 수유가 없었거든요. 분유 그런 거 사 먹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급을 쪼개 쓰면서 애들 옷 덜 사고 여기에다가 투자했죠(사례 1).

(임신인 것 알고는) 지을 생각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 3개월 때 알아봤는데 450 정도는 내야 한다고 그 돈이 없으니까 낳았어요.……애를 낳고서 한 달 밖에 젖을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분유를 사 먹여야 하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고……수급에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사례 2).

관리비 이런 거 다 내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먹을 거랑 옷 사면 (남는 돈이) 없어요(사례 4).

■ 대체로 자녀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인 자녀들이 4사례로 적지 않았음.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임.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남한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음(표 4 참조).

-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 모두 기본 수업료(무상지원) 외에 수익자부담원칙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급비에서 충당하면서 부담이 크다고 함. 사례 4의 경우 월 수급액 110만원에서 두 자녀의 보육료로 한 달에 약 38만원 가량을 어린이집에 내고 있었음. 그러나 자녀가 어린이집을 옮기고부터 말도 잘하게 되고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함.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은 애들 공부할 때(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의미) 내는 비용 8만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달마다 8만원 빠지는 게... 교육비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거만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1).

- ◆ 정부가 제2차 기본계획에서 탈북 여성의 양육지원으로 수립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들 가정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가정은 개별 양육보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양육을 더 선호했으며 아이돌보미 이용 시 본인 비용 역시, 부담스러움.
- ◆ 또래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녀가 남한 말씨를 배우기를 희망함.

아이돌보미는 들어보기는 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이용할 계획도 없구요. 돈 나가는 게 힘들고, 남이 봐주는 게 아무리 잘 봐준다 해도 마음이 안 놓여요(사례 1).

아이돌보미는 쓸 계획이 없어요. 어린이집을 보낼 거예요(지금 대기 중). 남한테 애를 맡기는 걸 생각하기도 싫고 제가 보는 게 제일 편해요. 힘들어요. 어린이집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아이돌보미는 제가 돈을 내야 하잖아요.……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이유는 말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하려구요.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내 말씨를 따라 할까 봐 어린이집 가면 말도 배우도 춤도 배우고……(사례 2).

아이돌보미 그거 하면 돈이 들잖아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아이돌보미 쓰면....생각해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주변 언니들이 말해 줘서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버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더라고요(사례 5).

〈표 4〉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비동거 자녀		동거 자녀								
	자녀 수	국적	자녀 수	자녀 구분	성별	출생연도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자녀 국적	생부 국적	생부 동거 여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여부
1	1	중국	2	A	남	2016	언어발달 지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B	남	2018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2	1	북한	1	C	여	2019	양호	남한	북한	비동거	이용(예정)
3	-	-	2	D	남	2011	언어발달 지연, 심리치료(과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과거)
				E	여	2013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과거)
4	1	중국	2	F	여	2014	몸이 약함, 언어발달 지연, 언어치료(현재)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G	여	2016	몸이 약함, 언어발달 지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5	-	-	2	H	남	2003	양호	북한	북한	사망	-
				I	여	2019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예정)
6	-	-	1	J	남	2010	양호	남한	만족	사망	이용(과거)

다. 현행 정착지원의 문제점

1) 취업지원체계 미작동

- 탈북민 지원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제공을 위해 2010년 이후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중심의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초기 하나센터의 3주간 초기집중교육에서 초기정착 교육 20시간, 진로탐색직업준비 교육 20시간, 개인역량강화 교육 12시간으로 직업준비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였으나, 하나센터는 취업지원 외에도 관할지역 전입자 신병인수 및 초기 전입지원,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사례관리,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력연계 등 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취업지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임.

- ◆ 여기에 초기 정착 시기에 기초생계제도에 탈북민이 편입되면서 일자리보다 생계, 복지가 우선시 된 정착설계도 취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됨(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 2010: 28).

2) 탈북 빈곤 여성(한부모 가정) 특성을 간과한 취업장려정책

- 탈북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을 떠나거나, 탈북과정에서 중국동포인 남편들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장애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음. 즉, 지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탈북 남성보다 남한 정착에서 매우 불리함.
- 그러나 현행 정착지원정책은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이러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지금의 정착지원정책(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취업의 근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거나 건강이 여의치 않은 탈북 여성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 본인의 근로능력 부재, 배우자 부재로 인해 가구소득원을 국가의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입국 이후 5년간은 사회보장급여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계수급자로 생활하지만, 보호기간 이후에 탈북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함.
- 탈북 모자사망사건 이후, 일부 탈북단체가 그간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항의와 시위, 비판을 하면서 정부는 보호기간 10년 연장조치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탈북민 사회와 일반 시민사회 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후퇴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오히려 정착 초기부터 일반 시민사회 복지체제로 빠르게 편입하는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함.

3) 관계 부처 간 협업 기능 미작동

- 탈북민 지원정책은 통일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간의 협력 및 정부-지자체-민간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로는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 특히, 통일부는 탈북민 관련 기본 정보를 유관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정확한 기초자료 분석을 전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

4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가.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³⁾

-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탈북 여성,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거나 묵인한 결과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그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함.
- ◆ 탈북 한부모 가정을 타깃으로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매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들을 추가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함. 단, 추가 질문과 보기 문항 등은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해야 할 것임.

〈표 5〉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좌 동〉

3) 본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설훈 의원실과 공동 주관·주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함. 설훈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 한부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5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보도자료, 2020. 9. 25)을 발의하였는데 본 연구가 기여함.

법령	현행	개정(안)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가족현황 *현 실태조사에도 가족 관련 설문문항은 있으나 한부모 가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거의 없음. 따라서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한부모 가정 관련 상세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

- 정착지에서 보호기간 5년이 경과 후, 탈북민 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일부 산하의 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함.
 - ◆ 탈북민도 “특별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범주로 들어가려면 일반 시민들이 지원받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좀 더 빠르게 편입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초기 정착지에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주민자치센터)를 추가하여 일반 시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초기 단계부터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함.

다.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탈북 여성) 포함 검토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대상 모집 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참여 배제 대상임. 따라서 수급을 받고 있는 탈북 여성은 공공근로에 지원할 수 없음.
 - ◆ 그러나 근속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는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중 영유아 자녀(또는 초등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허용해서 노동을 통해 수입도 벌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인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기관교육·보육 지원정책 수립: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북 빈곤 여성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이 비용을 낼 만큼, 자녀교육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의무교육·보육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취학 전 대부분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으므로 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봄.
- ◆ 거주지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특별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또는 수익자와 반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표 6〉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시 행 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중략)..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하여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좌 동〉
	〈신 설〉	

마.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자는 노인(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어린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은 육아문제, 건강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임. 이에 관련 법 조항에 남한 입국 후 임신, 출산한 사람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표 7〉 취업보호기간 연장에 임신, 출산한 자 포함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시행 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좌 동〉
	〈신 설〉	3. <u>입국 후 임신, 출산한 사람</u>

I 참고 문헌 I

- 관계부처 합동(2018. 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보도자료(2020. 9. 25). <탈북한부모지원법> 발의.
- 이운진·김화순·김민주(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통일부(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